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I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 1 제도의 의의

####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②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4.5.28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③ 수립체계

####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
- 안전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 수립 절차

①	<b>안전행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li> </ul>
②	<b>지방자치단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li> </ul>
③	<b>지방자치단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li> </ul>
④	<b>지방자치단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li> <li>■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li> </ul>
⑤	<b>안전행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li> </ul>
⑥	<b>안전행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li> </ul>

## □ 수립 과정에의 외부 참여 제도 활용 권고

### ① 【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 ③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
  -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4.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안전행정부로 송신
-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① 기본방향

##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2 대상 및 작성 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5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5년도 최종 예산안 작성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16년도 이후) ‘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3 2015~2019년 수립기준 변경 사항

#### □ 계획기간 변경 (법 제33조 제1항 전단)

-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당해”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 수립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15~’19년)으로 변경

#### □ 수립절차 변경 (제1항 후단)

- ‘지방의회에 보고’를 삭제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

####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제3항 각 호, 신설)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각 항목이 빠짐 없이 작성되도록 유의(목차 구성안 및 세부작성내용 참조)

####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구분 (제3항 제3호)

- 각 세부사업별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국가계획은 해당 부처명(코드) 입력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 □ 기금을 계획에 포함 (제3항 제5호)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외에 자치단체별로 운용 중인 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사업 구분 (제3항 제9호)

- 각 세부사업 중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해당여부를 표시(BIL도표시)



□ 통합재정수지 추가 (제3항 제8호)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전망과 관리방안** 추가

\* 순수입-순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개념 및 세부작성요령은 pp.29~31 참조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제3항 제6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

※ 구체적인 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 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

□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 (제3항 제7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추가

※ 구체적인 범위,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 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

□ 내부거래 중복 제거를 위한 순계처리

- 기금이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규모가 순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순계처리과목 입력**(p.59 참조)

□ 계획의 실효성 강화 (제11항, 신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천재지변, 법·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

## 4 계획수립 세부사항

### 1. 중기세입 전망

####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pm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 감소 예측 등
- (지방세) 최근 5년간 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

- 지방소비세를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6%에서 11%로 인상('14.1.1~)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15.1.1~)
- 지역자원시설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과세강화(2배 → 3배 증가, '14.1.1~)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13.8.28~)
  - 6억원 이하 4%→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2%, 9억원 초과 4%→3%
-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14.1.1~)
  - (등록분) 1만원 이하 100%, 1만원 ~ 5만원 75%, 5만원 초과 50% 인상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14.1.1~)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은 담배 등 신종담배
- 지방세 감면 정비 지속 추진 등
  - 감면 축소대상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중견기업이상

- (세외수입) 「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정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순세계잉여금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도 이월금(실 예상액) 융자금회수(최근 5년간 추이)

## ②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고려
  - 각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pm 1\%$ 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수입 증감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
    - \* 예산심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은 10월 중순경 내시 예정

## ③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 2.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

### ①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별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②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채무관리 수준, 재정수지 등
  -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〇〇% 증가 등
  - 채무수준 : 사업예산규모 대비 〇〇% 등
  - 재정수지 : 재정수지 〇〇% 이하 유지

### ③ 자원배분 방향

-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 예시)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확대(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 및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 \*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15년 00만달러 → '19년 00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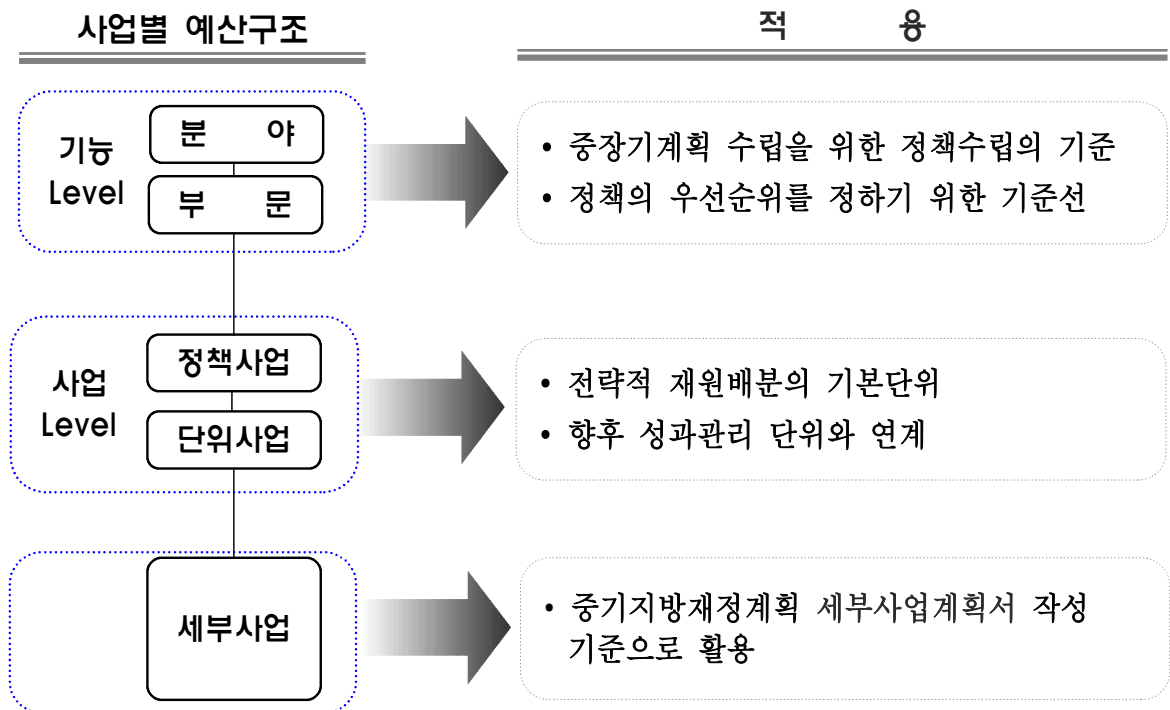
### 3.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①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② 분야 분류체계

-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
  - 중장기 자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기능별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4 재정·금융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b>026 소방</b>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2 고등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62 관광 064 문화재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3 대기 075 해양	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	082 취약계층지원 085 노인·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품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3 해양수산·어촌	102 임업·산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4 해운·항만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23 도시철도 125 항공·공항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	142 지역 및 도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 ③ 세부사업계획

####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될 주요 사업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주요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예산규모, 세부사업 수 등을 고려)
  - 다만, 아래 표 ‘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

#### < 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 >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 기초자치단체
  - ┌ ‘14년 예산 3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 ‘14년 예산 3천억원 미만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 기초 3억원 이상 (총사업비 기준)
-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5~’19)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우리시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 : 450,672백만원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
  
  -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 자체사업(시군구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으로 입력, 기초에서는 국고 / 시도비 / 자체사업으로 입력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 정부지급금 = 임대료 + 운영비
- (임대료)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
  - (운영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



#### 4. 계획 수립 세부일정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li> </ul>	'14년 7월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조서 입력</li> <li>*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li> </ul>	8월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li> <li>*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월 중순)</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 제출</li> </ul>	11월
↓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li> </ul>	'15.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li> </ul>	2월
↓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 보고</li> <li>•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li> </ul>	3월